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개정취지〉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 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단서 삭제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적용시기〉 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 (좌 동)
(추 가)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도 포함 * 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ii)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개정취지〉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기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적용시기〉(❷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❸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개정취지〉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	l세액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	t 0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1 금액 × 98% × 35%)	천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 +(1,400만원 초과 금액 × 96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 +(2,800만원 초과 금액 × 96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 +(3,000만원 초과 금액	,369,600원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13,385,600원) +(4,500만원 초과 금액×42%)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 + (4,500만원 초과 금액 :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31 +(8,700만원 초과 금액 :	
○ 자녀세액공제 기준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20세 이하 자녀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기계					

〈적용시기〉 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좌 동) - 2021년 소비금액 [*]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 ●~④ 금액의 합계액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 (좌 동)
총급여 기준한 도7천만 원 이하300만 원7천만 원~1.2억 원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 100만 원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적용기한) 2022.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좌 동)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0%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취지〉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022.12.31.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종 전	개 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연구원 ②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감면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적용시기〉 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신설)

〈개정취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T &	'21년	'22년~
1666 44	1070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 분 30%		1천만원 초과분	35%	30%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